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재난안전과-20469
등록일자	2015.11.30.
결재일자	2015.11.30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민방위팀장	재난안전과장	안전교통국장		
공순영	이준	신동명	전결 11/30 조홍기		
협조자					

2015년도 하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실태 일제 점검 및 정비 조사계획



2015. 11. .

강 남 구
(재 난 안 전 과)

'15 하반기 민방위시설장비분야 일제점검계획

민방위 시설장비를 평상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민방위사태 발생시 즉시 활용하기 위한 하반기 일제 점검 및 정비 계획임.

I 큰 거

법령 및 지침

분 야	점 검 주 기	근 거
주민대피 시 설	시·자치구 : 반기 1회이상 소유자 : 분기 1회이상	* 민방위기본법 제4조(재정상의 조치) 제15조(민방위 준비) 제15조의2(점검 등) 제22조(검열)
비상급수 시 설	개방시설 : 월 1회이상 미개방시설 : 분기 1회이상	
민 방 위 장 비	시·자치구 : 반기 1회이상 관리책임자 : 분기 1회이상	
화생방 장비·물자	시 : 반기 1회 자치구 : 분기 1회	* 2015년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 지침

※민방위담당관-18276(2015.11.24.)'하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.관리점검 및 정비조사계획

II 추진 방향

민방위 시설장비의 주기적인 점검·정비로 최적의 상태 유지

- 민방위시설 주변 화경정비 및 안내표지판 정리를 통한 주민 인지도 강화
- 부적합시설(시설노후, 안전관리 문제시설) 폐쇄 또는 지정해제 등 정비
- 화생방 장비·물자의 효율적인 정비와 관리(방독면 포함)

※ [민방위기본법] 제15조의2(점검 등)에 의거 점검

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(국비,시비 보조사업)추진상황 점검

※ [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] 제25조 및 동법 제29조에 의거 이행실태 점검

민방위 시설장비 현황 통계조사를 통한 데이터 현황화 추진(통계조사)

Ⅲ 점검 개요

- 지역대 및 직장민방위대 정비기간 : 2015. 12. 1. ~ 2015. 12. 11.
- 점검대상 : 민방위 시설·장비 일체(화생방 포함)
 - 점검결과 현황기준 : 2015. 11. 30
- 현장점검
 - 기 간 : 2015. 12. 7. ~ 12. 10(4일간)
 - 점 검 자 : 재난안전과 민방위팀장외 3명
 - 점 검 내 용 : 세부 점검 및 정비 내용 참조
 - 점 검 방 법 : 현장점검 및 자체점검 실시

구 분	12.7(월)	12.8(화)	12.9(수)	12.10(목)	비 고
자체 점검	신사동 논현1,2동 압구정동	청담동 삼성2동	역삼1동 역삼2동 개포1동	개포2동 개포4동	반드시 전·후 사진 첨부
현장 점검	삼성1동 대치1동	대치2,4동 도곡1,2동	일원본동 일원1,2동	세곡동 수서동	..

※ 서울시점검 : 2015. 12. 14일

Ⅳ 분야별 정비·점검·조사 내용

민방위 비상대피시설

주요 점검사항

- ❖ 대피소 안내표지판 점검·정비 및 홍보
- ❖ 대피시설 점검책임자 지정 및 소유주 계도 지속 실시
- ❖ 부적합시설 폐쇄 또는 지정해제 등 정비

- **주민대피시설 확보, 시설 활용 및 점검 및 정비**
 - 인구대비 부족 또는 과도지정 지양, 운영책임자 지정 여부
- **시설내 방송 청취시설(스피커) 및 청결 상태 확인**
 - 유사시 즉시활용 가능토록 물건 적재 및 고정시설물 금지
- **시설 안내·유도 표지판 설치, 부착 위치등 시설 주변 환경정비**
 - 미부착표지판 정비 및 안내표지판 교체시 [다국어 표지판 설치](#)
 - 탈색되고 낡은 표지판은 반드시 새것으로 교체
- **부적합시설(시설노후, 안전관리 문제시설) 폐쇄 및 지정해제**
 - 폐쇄된 지하상가나 야간영업(주점, 다방) 등은 지정해제 검토 및 우가 지정금지
- **유사시 대피시설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시설 운영·관리**
 - 대피에 방해되는 무거운 물건 적재 및 고정시설물 금지
 - 비상시 출입 가능한 시건장치 운영(관리자와 시설 인근 주민정보 공유 등)

민방위 비상급수시설

주요 점검사항

- ❖ 정부지원/지자체시설 확충현황, 수질별 확보현황
- ❖ 비상급수시설개방, 지정.해제 및 폐공현황, 비상발전기 현황

- **자치구별 인구대비 적정량(100%) 확보**
 - * 음용수 및 생활용수 확보율 저조지역은 자치구별 수립된 비상급수계획과 연계하여 확보 추진
- **시설 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**
 - 새울행정시스템 내 주소정보 확인 및 정비
 - 주민이용에 적합한 환경 유지(음수대 청결, 불량수도꼭지 교체 등)
- **노후배관, 수중모터교체 및 자가발전설비 등 부대시설 확보·정비**
 - * 발전기 미보유(고정식 설치불가시 이동식 비상발전기 설치 가능) 또는 작동불능 시 대체방안 마련

- 수원 고갈 및 수질오염 등 부적합시설 지정해제 및 폐공
 - * 수질검사결과 주기적(3회이상) 불합격 등 개선 여지없는 시설 해제 등
- 수질과 수량이 적합하고 민원발생 소지 없는 민간시설 신규 지정 추진
- 비상급수시설 정기점검(분기 1회) 실시 및 조치
 - * 비상사태시 바로 음용이 가능한 수질상태 유지

< 점검 내용 >

- ✓ 월별 1회이상 관리책임자(담당과장, 동장) 점검
- ✓ 모터펌프 등 월1회 이상 최소 15분 이상 작동(수질오염 방지)
- ✓ 비상발전기 등 부대시설 작동여부 수시 확인 및 기록 유지
- ✓ 법정 주기에 의한 수질검사 실시 여부

※ 자치구 물관리담당부서 자료와 민방위부서의 민방위 급수시설 자료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으니, 자료대조 및 일치여부 확인후 서울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제출

민방위장비

주요 점검사항

- ❖ 민방위장비 확보기준(국민안전처, 서울시 지침)에 맞는 장비 확보실적
- ❖ 민방위대 별(지역대, 직장대, 기술지원대) 필수장비 6종에 대한 종류별 100%이상 확보 여부

- 장비 확보기준(필수6종)에 맞는 적정장비 확보여부
 - * 부족시 확보계획 수립 등
- 장비 정상작동 확인 및 사용불가 장비는 폐기 또는 교체추진
- 각종 장비의 마모, 훼손시 부품교체 등 정비 및 노후장비 교체
- 지역 및 직장대 장비보유율 제고를 위한 추진 노력
- 특히 직장민방위대 장비 확보를 위한 독려 및 협조공문 발송
- 장비보관 장소 적정여부 및 서울행정시스템 입력 등

- ✓ 장비현황 관리(서울행정시스템 입력 등) 및 노후장비 교체
- ✓ 내구년한(3~10년) 경과 장비도 사용 가능성 여부에 따라 비축 관리
- ✓ 지휘용 앰프, 환자용 들것 등은 현재 활용도가 낮아 비축율이 낮으나 전시 등 비상사태 대비 100% 확보 추진

화생방 장비·물자

주요 점검사항 및 작성내용

- ❖ 방독면 및 화생방분대 장비의 보관 및 관리 상태
- ❖ 성능검사결과에 따른 부적합품 폐기여부
- ❖ 확보기준 대비 방독면 및 화생방분대 장비 확보 실적

○ 화생방 장비물자 관리지침에 의한 장비 관리

- 보관환경(온도, 습도, 직사광선 등)의 적합성,
- 현황판 및 불출계획 등 작성(최신화) 여부
- 관리자 지정 및 정기점검 실시 여부

○ 2014년 성능검사결과에 따른 시효기간 초과품 폐기 여부

- 일반 / 한국형 방독면 : 2002년 생산품까지 폐기
- 국민방독면 : 2009년 생산품까지 폐기
- 탐지지(KM9), 제독용액(DS-2), 피부제독제(KD-1), 해독제(KMAKR-1) : 2009년 생산품까지 폐기

V 행정 사항

- 지역대 및 직장대별 자체점검·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수립
- 지역대 및 직장대별 계획에 따라 조사 실시 후 결과를 **붙임 1 서식으로 2015. 12. 11(금)까지 제출**
※ 민방위시설장비 정비 전 · 후 사진 필히 첨부
- 자료 제출시 **서울행정시스템의 현황과 일치**하도록 작성

붙임 1.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·관리 점검 결과 작성 양식 1부. 끝.